

-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기관 -

# 2022년 인권경영보고서

## 목 차

<b>1</b>	추진개요	2
<b>2</b>	추진현황 (2019~2021년)	2
<b>3</b>	추진현황 (2022년)	3
<b>4</b>	인권경영 추진목표 및 체계도	4
<b>5</b>	단계별 추진 결과	5
	1.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5
	2.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7
	3.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10
	4. [4단계] 구제절차 제공	10

[별첨]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권경영 규칙

## 1 | 추진개요

### □ 추진배경

- (추진배경)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인권 우선’ 추진 및 공공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 강조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라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8.)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인권침해 보호의무,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 등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영역 평가항목으로 인권경영 반영
- (기관의 현황) ‘19년 인권경영 도입 및 인권경영 매뉴얼 4단계 단계별 수행으로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천

## 2 | 추진현황(2018~2021)

### □ 추진시스템 구축(2018~2021)

-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권경영 규칙 제정(2018.11.8)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청렴감사실) 지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9.5.24.)
  - 구성: 원장 1인, 당면직 2인, 노동조합 1인, 외부위원 3인(총 7명)
- 전직원 대상 인권경영 기본교육 시행, ‘슬기로운 인권경영 캠페인’ 실시
- 기관 월례회의 시 인권경영현장 선언 및 대내외 공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및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 3 | 추진현황(2022)

### □ 인권경영 시스템 운영 (2022)

- 공공기관장 및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 참여 (2022.08.24)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1차)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2.08.~09.)
- 전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심화교육 실시 (2022.09.01.)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2.10.~11.)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2차) 실시 (2022.09.24.)
- 2022 인권경영보고서 대내외 공표(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 등)

## 4 인권경영 추진목표 및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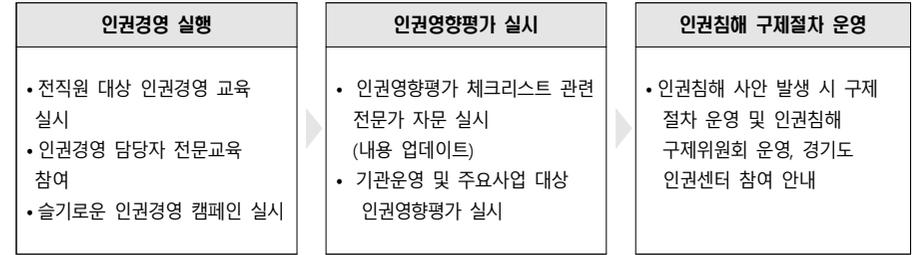
### □ 대내외 경영여건

구분	경영환경	전략적 시사점
경영여건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에 대한 이슈 관련 관심 증가</li> <li>• 인권에 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배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역할 중요</li> </ul>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인권경영 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인권경영 교육 시행으로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전사적 차원에서 평등한 직장 문화 선도</li> </ul>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이행계획 제출(2018.10)</li> <li>•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0.05)</li> <li>•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 권고(2022.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li> <li>•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위원회 개편으로 실질적인 인권업무 필요</li> </ul>
고객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권역센터 확장에 따른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요구</li> <li>•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고도화된 인권경영 시행</li> <li>• 선도적인 인권경영 시행 및 홍보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li> </ul>

### ○ SWOT 분석 및 전략과제

		강점(S)	약점(W)
내부역량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첫 시행 이후 2020년 인권 경영 확대 운영으로 인권경영 선도 이미지 구축</li> <li>• 2021년 인권경영 4단계 이행 완료, 2022년 지속적인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편임</li> <li>•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시행해본 적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경기도에서 인권 경영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요체로 강조함</li> <li>• 사회적 핵심 과제들을 공공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필수 이수 요건으로 이해도를 높임</li> <li>•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른 시범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li> </ul>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경영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기관의 선도적인 이미지 추구</li> <li>• 정부 및 도 정책 이행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선제적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확보</li> <li>• 인권 침해 발생 시 발생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이 10년 이상 된 경우 기존 관습이나 정체된 사고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li> <li>• 도민 및 지역사회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성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협의에 따른 단체협약 교섭 목표 달성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li> <li>• 코로나19시기 문화뉴딜 사업, ESG경영에 따른 탄소중립 및 저감 실천 활동 실시</li> </ul>	

### □ 인권경영 추진체계



## 5 단계별 추진결과

### 1. 1단계 : 인권경영 체계 구축

#### □ 인권경영 추진 조직 재구성

##### ○ 인권경영 총괄 전담부서 재지정(2022.01.01.) : 청렴감사실

-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경영 교육 실시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권경영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발생 시 절차의 간소화와 원활한 소통으로 신속하고 총괄적 관점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하고자 청렴감사실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함

####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권경영 실행력 강화

- (역할) 재단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자문 및 심의
- (구성) 내·외부위원 총 7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외부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2019년 인권경영위원회 설립 이후 2020년~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결과 대상 자문 및 차후년도 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분야	비고
1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인권경영 규칙에 따라 선정
2	차상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3	고영만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장		
4	김영경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 대표		
5	박덕수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소장	인권	경기도 인권담당관 추천
6	김희진	인권침해 예방활동 연구소	대표	인권	
7	권선미	더공감인권연구소	대표	인권	



## 2. 2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선,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함

### □ 수행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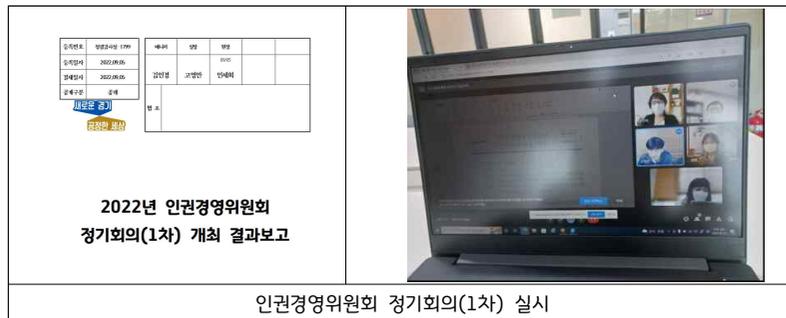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각 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요청 및 수집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실시

###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되 전문가 자문 및 기관 사정에 맞춰 보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되 전문가 자문 및 기관 사정에 맞춰 보완

### ○ 2022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1차)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인권경영 규칙 제정(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 추가 등)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교육 관련 사항, 인권경영보고서 제작 관련 논의 등



### ○ 2022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2차)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진행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과제 도출
- 2022 인권경영보고서 내용 확인 및 추가사항 논의
- 2023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인권경영 교육 확대 여부 및 정기회의 개최 시기 등) 논의

- 공정운영 4개 분야, 비차별 2개 분야, 개인정보보호 4개 분야 대상 실시

## □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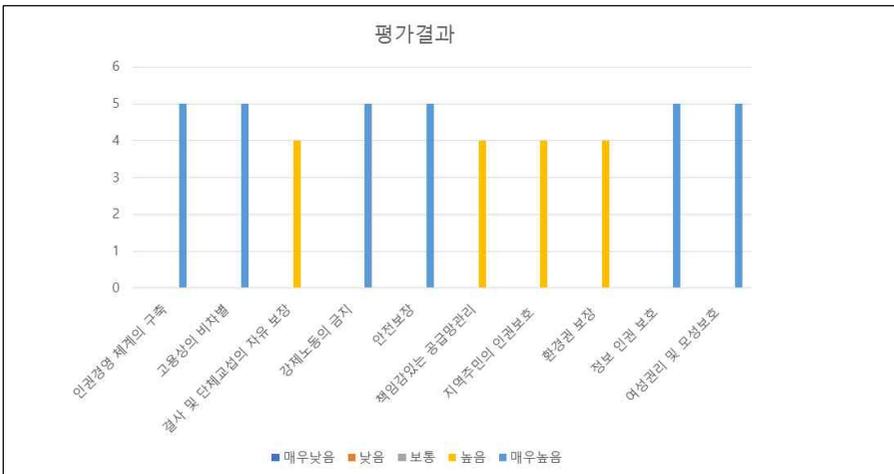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총 10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됨

구분	분 야	평가결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매우 높음
2	고용상의 비차별	매우 높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높음
4	강제 노동의 금지	매우 높음
5	안전 보장	매우 높음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높음
7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	높음
8	환경권 보장	높음
9	정보 인권 보호	매우 높음
10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매우 높음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 노동의 금지, 정보 인권보호, 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매우 높게 나옴
- ▶ 안전 보장은 경영평가 이후 포괄적인 안전관리 계획안 작성으로 전년대비 높음으로 표시됨
- ▶ 환경권 보장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미화직 직원들의 휴식공간 구축)으로 전년대비 높음으로 상승함
- ▶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는 코로나19 시대 공공 기관의 사회적 역할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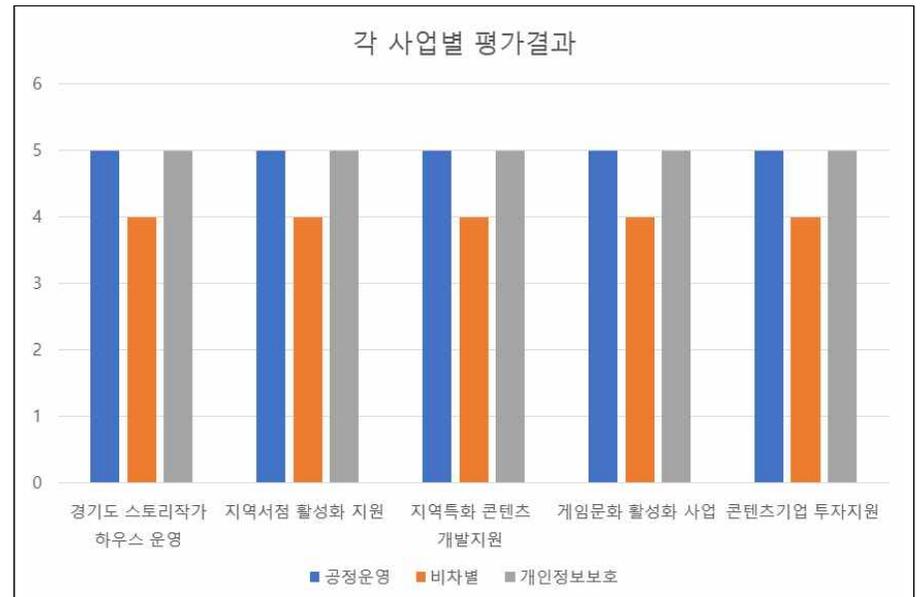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총 3개 분야 중 10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됨
- 인권경영 전문가 자문에 따라 대상 사업을 선정, 전년대비 축소하여 주요사업 대상 평가를 진행함

구분	분 야	평가점수
1	공정운영 분야 4개 지표	매우 높음
2	비차별 분야 2개 지표	높음
3	개인정보보호분야 4개 지표	매우 높음

- ▶ 개인정보 보호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매우 높음으로 나옴
- ▶ 비차별 분야는 모집공고 방식 및 홍보물 제작 관련 다양한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높음으로 나타남
- ▶ 공정운영 분야는 콘텐츠 제작 시 다양한 인권 보호 요소(성인지 감수성, 아동인권 보호, 성소수자 등)를 고려해야하는 것을 사업담당자 및 지원사업 수행자도 인지한 상황으로 매우 높음으로 나옴



### 3. 3단계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 인권경영 실행 및 대내외 공개

##### ○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과제 특성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관리

구분	과제명	기간	담당부서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단체협약 이후 노사상생선언	단기	경영지원팀
2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 계약 및 용역업체, 지원기업의 관련 회사로 확대	장기	경영지원팀
3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 주민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추진	중기	청렴감사실
4	[비차별 분야] · 사업공고 시 홍보 대상 다각화	중기	각 사업팀

##### ○ 소통 창구 다변화 및 인권경영 공개

-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내에 있던 인권경영 항목을 도출화하여 대내외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인권경영 전 과정에 대한 공개(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등)

### 4. 4단계 : 구제절차 제공

#### □ 인권침해 구제절차 세부 운영 절차 수립 및 운영

#####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매뉴얼 수립

- 사건 접수→예비조사→사건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경영진 보고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심의 및 의결→시정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수립

#####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마련 및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등

-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위원회 소위원회(총 인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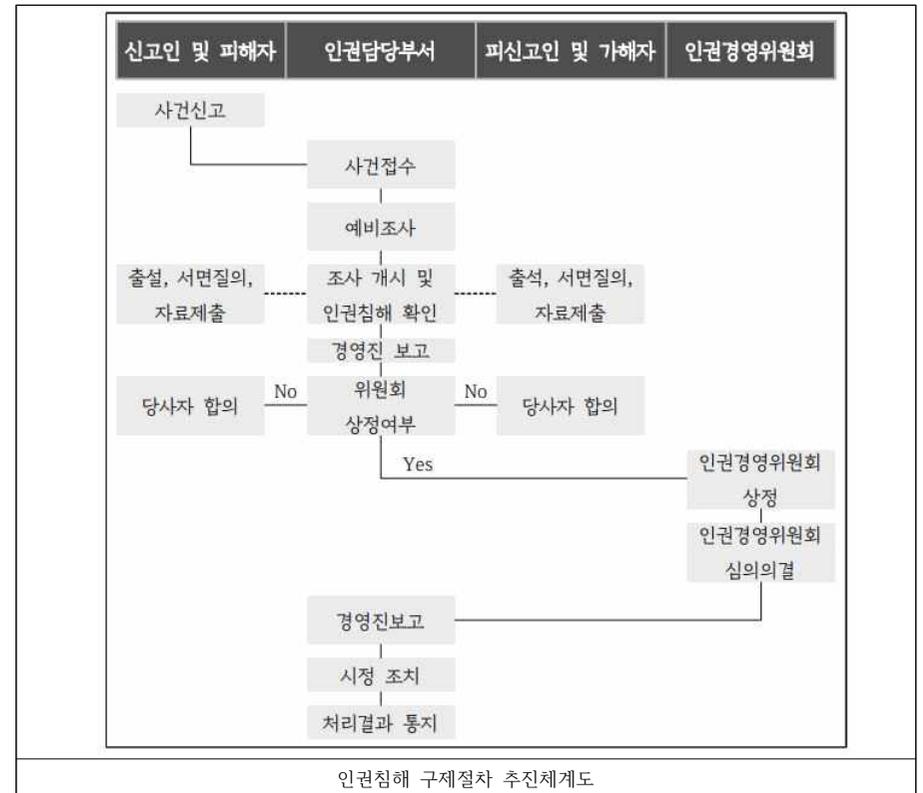
과반 수 이상 참석)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성

##### ○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 대내외 홍보

구분	구제절차 홍보 방안
내부 구성원	-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문서 공유,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공지
외부 구성원	- 홈페이지 인권경영 항목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

##### ○ 소통 창구 다변화 및 인권경영 공개

-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내에 있던 인권경영 항목을 도출화하여 대내외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인권경영 전 과정에 대한 공개(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등)



[첨부자료]

## 인권경영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

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둔

다. 다만 진흥원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특정부서에서 겸직 또는 겸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담당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담당부서는 진흥원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진흥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은 원장, 인권담당부서장(본부장급), 인사·노무담당 부서장(본부장급) 3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④내부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⑤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원장이 임명한다.

1. 진흥원 이사
  2. 인권단체 활동가
  3. 인권단체 연구자
  4. 변호사
  5. 노무사
  6. 기타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진흥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⑦인권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행완료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⑧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인권담당부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안건인지 확인한다.
2. 인권담당부서는 사건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3.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한 내용을 확인시키고 조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진술토록 한다.
4. 담당자는 처리기간 내에 사건조사 결과서를 작성, 원장에게 보고한다.
5. 인권경영위원회 총 7인 중 4인으로 구제위원회를 구성, 소집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7.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요구한다.
8. 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과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9.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한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
10.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의결 및 진흥원 조치 후, 재발이나 보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위 명시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별지 제 2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책임자 확인
		소속	성명				

[별지 제 3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주 소		
1. 신청취지와 이유		
2. 조사내용		
참고자료		
결정 사항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가 <input type="checkbox"/> 시정조치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뢰 <input type="checkbox"/> 외부기관 이첩
	사유	
년    월    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